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



보건복지부



국방부



소방방재청



해양경찰청



산림청

1장 총 칙

1. 지침의 목적

이 지침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헬기 보유 기관 간 헬기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용어의 정의

- 1) "응급의료헬기"란 응급의료종사자가 탑승하여 응급환자를 항공이송 할 수 있는 각 부처 소관 헬기를 말한다.
- 2) "응급의료 전용헬기(이하 "닥터헬기")란 응급항공 이송을 전담할 목적으로 내부를 개조하고 응급의료장비 및 부대장비 등을 탑재한 회전익(回轉翼) 항공기로서, 전문의를 포함한 응급의료 종사자가 탑승하여, 현장에서 의료기관에 이송될 때까지 환자에게 응급의 료를 실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헬기를 말한다.
- 3) "헬기 공동활용체계 참여기관"은 응급의료헬기를 보유한 보건 복지부, 국방부, 소방방재청, 해양경찰청 및 산림청 5개의 상위 기관을 말한다.

3. 적용 범위

이 지침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「응급 의료 전용헬기 도입·운용사업」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헬기 공동 활용체계 참여기관은 응급의료헬기 운영과 관련된 소관 부처 법규 및 규정에 이 지침의 내용이 반영하여야 한다.

2장 응급의료헬기 출동체계

1. 응급의료헬기 출동시 119에 운항정보 제공

- 1) 참여기관은 소관 응급의료헬기 출동시 운항정보(출동시간, 출동 위치 등)를 관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알려야 한다.
- 2)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제공받은 헬기 운항정보를 관내 다른 참여기관에 신속하게 알려, 동일한 신고접수건에 대해 중복출동하지 않도록 한다.

2. 중증환자 발생시 닥터헬기 우선출동

- 1) 참여기관이 응급의료헬기 출동신고 접수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경우 우선적으로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① 중증응급환자(별표1)
 - ② 사고지점이 배치병원 반경 70km이내
 - ③ 시계비행가능시간(평일 및 휴일 일출 ~ 일몰)
- 2) 닥터헬기 외에도 신고접수 기관이 상황 상 소관부처 헬기보다 다른 기관 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, 다른 참여 기관에 헬기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.
- 3) 1,2항에 따라 헬기 출동을 요청받은 기관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,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,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신속히 출동 가능한 다른 헬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.

3. 응급의료헬기 가동훈련

소방방재청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상 긴급구조 훈련과 연계하여 응급의료헬기 보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 실시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4. 그 밖에 헬기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 논의

참여기관은 그 밖에 헬기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수시로 실무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. 회의 개최는 안건이 있는 소관 부처에서 주관하고,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닥터헬기 운용 세부지침(안) 별첨 1

1) 구급차 운행 가능 지역 : 지상이송보다 항공이송이 효과적인 경우

분류	기준
중증외상의 의증	○ 손상기전 - 차량 사고(경운기와 트랙터를 포함) · 동승자가 사망하였거나, 환자가 차량으로부터 방출 · 차량의 50cm 이상, 객실의 30cm 이상의 함몰 · 차량의 전복 - 자전거, 오토바이 사고 · 35km이상의 속도로 추돌, 탑승자의 이탈 - 추락 등 · 3층 이상 또는 산속에서 추락 · 충상 및 관통상 · 열차, 선박, 항공기 사고 ○ 환자의 외관 - 두통, 구토 또는 변형을 동반한 두부 외상 - 2개 이상 사지의 변형 및 절단 - 체강이 개방된 손상 또는 개방성 골절 ○ 활력징후 - 의식저하(V이하) 또는 관찰 중 지속되는 의식 저하 - 촉지되지 않거나 약한 맥박, 얕거나 없는 호흡 - 쇼크의 징후(저혈압 또는 빈맥 또는 빈호흡) - 사지 중 1개 이상의 마비 - 대퇴골, 골반, 척추 및 다발성 늑골골절의 의심 ○ 임부의 외상 ○ 낙뢰, 감전 및 중증화상(화염과 연기에 노출)
심근경색의 의증	○ 갑자기 발생한 흉통 또는 심계항진 ○ 과거력 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있는 환자의 흉통 또는 심계항진 ○ 저혈압 또는 호흡곤란
뇌졸중의 의증	○ 갑자기 발생한 사지 중 1개 이상의 마비 ○ 갑자기 발생한 사지 중 1개 이상의 감각마비 ○ 갑자기 발생한 외안근, 안면근 및 설근의 마비 ○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 ○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
기 타	○ 생명의 위협 또는 사지 손실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용 항 공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2) 구급차 운행 불가능 지역 : 항공이송 외에 신속한 이송 수단이 없는 경우, 구급차 운행 가능지역의 출동요청기준과 더불어 적용

분류	기준
외상	○ 지혈되지 않는 외부 출혈○ 사교상○ 벌, 해파리 등에 의한 쇼크
중증응급질환	○ 경련지속상태(status epilepticus) ○ 급성 호흡 곤란 ○ 심정지 ○ 감압증 ○ 복부의 압통을 동반한 급성 복증 ○ 소화관의 출혈 ○ 농약,독극물 중독 ○ 익수 ○ 갑자기 생긴 호흡곤란 ○ 분만의 징후가 있는 산모 ○ 신생아